



제 428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 요구 불응 시
도선사 면허 취소 등〉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479호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 요구 불응 시 도선사 면허 취소 등 ...	3

I. 제안경위

2025년 7월 15일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7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선사가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하거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에는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약물·환각물질은 음주와 달리 그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었는데, 「해상교통안전법」의 개정으로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현행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환각물질 투약 후 도선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 요구 불응 시 도선사 면허 취소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도선사가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1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 ----- ----- -----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	11. -----제40조제1항제2호----- ----- ----- -----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② ~ ⑥ (생략)	<u>따르지 아니한 경우</u> ② ~ ⑥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9조에 따르면¹⁾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①-1)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하거나 ①-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해상교통안전법」의 구조를 보면, 제39조에서는²⁾ 술에 취한 상태

1) 「도선법」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9. (생략)

10.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

2)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뭇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같다]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이하 "도선"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이하 "운항자"라 한다) 또는 도선을 하는 사람(이하 "도선사"라 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하여야 한다.

1.~3. (생략)

에서의 도선을 금지하고 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도선사가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도선사는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3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도선이나 이에 대한 측정 불응에 대하여 벌칙을 두고 있음.

하지만, 같은 법 제40조에서는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도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도선사에 대하여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 그런데, 김상훈의원 및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16, 2211476)에서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도선사의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동 개정안은 「해양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약물·환각물질의 영향 하에서의 운항은 음주운항만큼 해상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약물운항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측정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며,

해당 조치가 마련되는 경우 음주운항의 경우와 동일하게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하는 것 또한 법체계를 고려했을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참고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경우에는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참고 법률(「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93조(법률 제20864호, 2026. 4. 2 시행)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의2. 제4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문 의 처

02)6788-5418